



2025, 지금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전환점

제도와 생태계 확장이 교차하는 구조적 변화의 시작

Richard Rosenthal 외 14인

Deloit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목차

리더 메시지 03

1.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기반 구축 04

2. 시장과 규제 환경의 변화 06

3. 생태계 참여 전략과 기업의 역할 08

4. 시장 기회와 활용 가능성 09

5.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리스크 11

6. 시장 참여를 위한 핵심 역량 14

7. 영향 분석 및 대응 프레임워크 15

8. 결론 및 시사점 26

주석 27

리더 메시지



이동기 파트너

Blockchain & Digital Asset 그룹장 |
컨설팅 부문

2025년, 미국을 중심으로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PSC)의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한 '지니 어스 법안'(GENIUS Act)은 달러 기반 PSC에 대한 정의, 발행 요건, 준비자산 구성, 이용자 보호 기준 등을 포괄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디지털자산이 아닌, 신뢰 기반의 지급결제 인프라로 정립하려는 국제적 흐름을 반영합니다. 글로벌 자본과 결제 시스템이 빠르게 디지털화되는 가운데, 주요국은 규제 공백 해소와 제도 기반 마련을 통해 자국의 금융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발행 기준, 회계·세무 처리 기준 등이 정비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결제,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 지급 등 실제 활용 사례는 이미 국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한국의 통화 주권 및 외환 관리 체계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업계의 찬반론과 함께 정책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PSC 규제 프레임워크와 관련 생태계 흐름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향후 국내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과 더불어, 생태계 참여 전략, 잠재적 기회 및 리스크 대응 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제도화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과 기관들이 국제적 규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와 디지털자산 전략을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01.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기반 구축

2021년 발간된 『So You Want to be a Stablecoin Issuer』와 2023년의 『Engaging with Stablecoins』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특성, 시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 산업의 주요 흐름을 조망해왔다.¹ 2025년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과 거래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며, 이제는 전통 금융기관들까지 본격적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금융 규제 당국의 입장 변화, 그리고 의회에서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 이하 PSC) 관련 입법 논의가 맞물리며, 스테이블코인은 점차 제도권 금융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

PSC 발행을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단순한 시장 기회뿐 아니라 규제 환경, 내부 운영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단순한 기술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년은 PSC가 제도권 금융과의 실질적인 접점을 넓혀가며,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변곡점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을 견인하는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다:

- ✓ 미국 행정부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정책적 우선순위로 명확히 제시함.²
- ✓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입법 논의가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음.³
- ✓ 은행,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PSC 발행과 인프라 참여를 적극 검토하면서 전통 금융권의 참여가 본격화됨.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실험적 기술을 넘어, 제도와 시장이 공동으로 형성해가는 새로운 지급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으며, 2025년은 이러한 변화가 본격화되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는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전략과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본 리포트는 그 간의 논의를 확장하여 주요 규제 변화의 흐름을 짚고, 업계 실제 사례를 반영한 '영향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새롭게 제시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PSC 발행을 준비 중인 금융기관들이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내부 역량을 점검하고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용어 정의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2025년 2월 미국 상원에 제출된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법(GENIUS Act,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에서는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특히 지급결제 기능에 특화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을 목표로 한다.

(A) 지급결제 또는 정산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그러한 용도로 설계된 디지털자산으로서, 그 발행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i) 고정된 금액의 법정 화폐로 자산을 환전·상환·재매입할 법적 의무가 있을 것
- (ii) 자산의 가치를 고정된 금액의 화폐에 연동하여 유지하겠다고 명시하거나, 시장에 그러한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고 있을 것

(B) 또한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i) 국가 통화 (national currency)
- (ii) 『연방예금보험법(FDIA)』 제3조에 정의된 예금(deposit),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하여 기록된 예금
- (iii)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가 아닐 것
- (iv) 1933년 증권법, 1934년 증권거래법, 1940년 투자회사법에 정의된 ‘증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단, (A)의 요건을 만족하는 채권(bond), 어음(note), 채무증서(evidence of indebtedness), 또는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은 예외로 허용



02. 시장과 규제 환경의 변화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미국의 정책 방향을 새롭게 재정립하기 시작했다. 그 첫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금융기술 분야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강화(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고, 연방 정부 각 기관들에게 60일 이내 기존의 관련 지침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했다.⁴ 이 행정명령은 특히 달러 기반 PSC의 글로벌 확산을 정책적 우선과제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만, 이러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상태다.

규제 당국의 변화 움직임

연방 규제기관들은 기존 디지털자산 관련 지침을 일부 철회하거나 조정하면서 감독 접근 방식을 재정비하고 있다.⁵ 2025년 3월 7일,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은행의 디지털자산 업무에 대한 '사전 감독 승인'(supervisory non-objection) 절차를 규정한 『해석서한 1179호』를 공식 철회하였다. 동시에 OCC는 기존 해석서들에 기반해, 국립은행이 암호자산 수탁, 분산원장 기술 활용,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OCC가 디지털자산에 대한 새로운 감독 방향을 정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⁶

입법 동향

2025년 2월 기준, PSC에 대한 연방 차원의 법적·규제적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한 세 가지 법안이 미 의회에 발의되어 있다. 첫 번째는 Bill Hagerty 상원의원(공화당, 테네시)이 발의한 GENIUS Act, 두 번째는 French Hill 하원의원(공화당, 아칸소)의 STABLE Act, 세 번째는 Maxine Waters 하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이 발의한 미공개 법안이다.⁷ 이러한 입법 움직임에 따라, 2025년 중 PSC 관련 법률이 실제로 제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이는 더 많은 기업들이 PSC를 발행하도록 유도하고, 기존 기업들이 사업 모델에 PSC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 같은 정치적 변화는 규제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기반과 상품으로서의 제도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에게 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법안 모두 연방 차원의 PSC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이는 제도화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들 법안에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 ✔ 유통 중인 PSC 수량에 상응하는 1:1 준비자산 보유 의무
- ✔ 준비자산으로 인정되는 자산 유형에 대한 제한
- ✔ 준비자산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및 인증 절차

또한, 세 법안 모두 PSC의 허가된 발행 주체를 '비은행 금융기관'(NBE, Nonbank Entities) 또는 '부보예금기관'(IDI,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의 자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주(州) 단위 프레임워크와 규제 당국의 역할

연방 차원의 제도 정비가 진행 중인 현 시점에서, PSC를 발행하려는 기업들은 여전히 뉴욕 금융감독청(NYDFS)의 비트라이선스(BitLicense) 체계나 주 정부의 머니서비스사업자(MSB) 라이선스* 요건 등, 주 단위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인가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로서는 주 기반 제도가 미국 내 PSC 발행을 위한 사실상 주요 규제 경로로 기능하고 있다.

연방과 주 규제 당국 간 역할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의회 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OCC, 주 규제당국의 역할과 권한 범위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향후 규제 구조가 어떻게 정리될지는 미지수다. 만약 GENIUS Act나 STABLE Act가 현행 안대로 통과될 경우, 주 정부 단독 인가 방식(state-only option)을 택하지 않은 비은행 금융기관(NBE)에 대해서는 OCC가 단독 연방 감독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주 인가 발행자(state-only issuer)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연방 인가 없이 주 정부 인가만으로 발행되는 PSC 구조는 소비자 보호 및 제도적 안정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발행 규모에 관계없이 규제 기반이 불충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한, 새로운 연방 규제체계가 도입될 경우, 주 법령을 어느 범위까지 대체(선점)할 수 있을지 여부도 논의의 핵심이다. 연방-주 규제기관 간 권한 배분 문제는 향후 최종 법안 확정을 앞두고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MSB(money service business) 라이선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이 관리하는 공식 금융서비스 사업자 등록 인증 제도이다. 이 라이선스는 가상자산 거래소, 해외송금 사업자, 가상자산 수탁(보관) 사업자 등 가상자산 기반 자금이전 사업자(money transmitter)에게 적용된다.

용어 정의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ayment stablecoin issuer)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세 가지 PSC 관련 법안에 따르면, PSC 발행 자격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제한된다:

- 비은행 금융기관(NBE): 부보예금기관(IDI) 또는 그 자회사가 아닌 기관
- 부보예금기관의 자회사(IDI Subsidiary)

NBE는 은행 지주회사(bank holding company)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은행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 기업이 운영할 수도 있다. 해당 법안들에 따르면, IDI 자체는 PSC를 발행할 수 없으며, 대신 토크화된 예금(tokenized deposit)의 발행만 허용된다.

03. 생태계 참여 전략과 기업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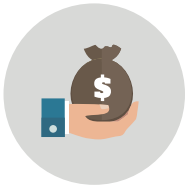
PSC 관련 시장 기회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내 어떤 가치사슬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지에 대한 지속적인 전략 판단이 필요하다. 어떤 기업은 선제적 전략으로 시장 점유율을 선도하려 할 것이고, 또 어떤 기업은 PSC 수요가 뚜렷해지는 시점에 맞춰 점진적으로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 이처럼 빠르게 진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전략적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경영진이 시장 환경과 경쟁 구도, 장기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을 내려야한다. 이제 각 기업은 PSC 생태계에서 수행할 역할을 명확히 고민할 시점이다.

PSC 발행과 운영 관련 주요 역할



- ✓ **발행자(issuer):** PSC를 직접 발행·유통하고, 상환 의무를 부담한다. 준비자산의 보유·운용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
- ✓ **거래은행(transaction bank):** PSC의 민팅(토큰생성) 및 상환 과정에 수반되는 법정화폐의 입출금을 처리하며 자금 흐름 안정화 역할을 수행한다.
- ✓ **준비은행(reserve bank):** PSC를 담보하는 준비자산을 보관·운용하며, 자산의 안전성과 유동성을 관리한다.

PSC 생태계 활성화 관련 주요 역할



- ✓ **수탁기관(custodian):** 고객 또는 이용자 명의로 PSC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용자가 관련 플랫폼에서 PSC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동을 지원한다.
- ✓ **플랫폼 제공자(platform builder):** PSC를 결제·정산·통합 등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와 기술 인프라를 개발·제공한다.
- ✓ **생태계 서비스 제공자(ecosystem service provider):** 기술 솔루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자본 등 PSC 생태계 전반에 걸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운영 안정성과 확장성을 제공한다.

PSC의 발행과 거래는 분산형/탈중앙화 블록체인(distributed and decentralized blockchain) 기반에서 이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플랫폼 간 경쟁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는 생태계 참여자들이 보다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시장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각 기업들이 전략적 입지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04. 시장 기회와 활용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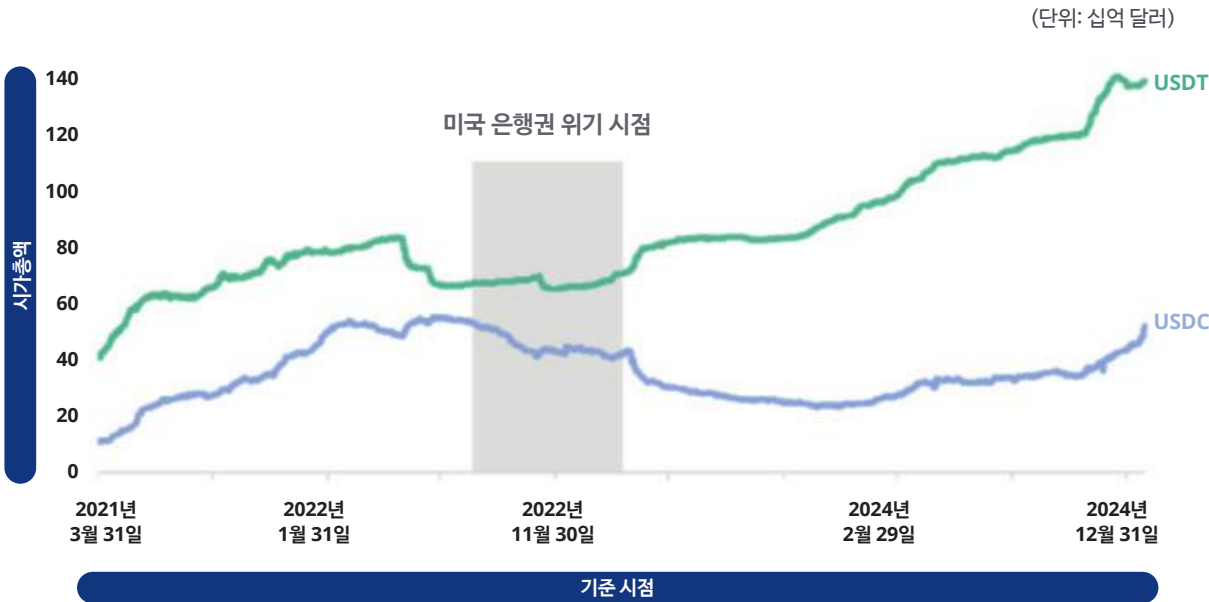
PSC는 국경과 금융기관의 경계를 넘어 즉시 결제와 낮은 수수료라는 분명한 이점을 제공한다. 이는 이용자들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전통적인 결제 인프라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며, 동시에 비트코인 등 법정화폐로 담보되지 않은 암호 자산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격 변동성 리스크도 회피할 수 있게 해준다. 현재 PSC의 시가총액은 2,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PSC 결제를 지원하는 신규 플랫폼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⁸ 시장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PSC 발행을 고려 중인 기업에게 새로운 진입 기회와 비즈니스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PSC는 그간 암호자산 및 디지털자산 거래의 중간 매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특히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교환 수단으로 기능해 거래 환경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활용 영역이 디지털자산 시장을 넘어, 해외 송금이나 일반 상업 결제까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는 기존 금융 인프라나 전통 결제망을 대체할 수 있는, 더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새로운 대안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준다. PSC는 이제 단순한 암호자산 기반 거래 수단이 아니라, 달러의 디지털 확장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소매 결제와 기업 간 거래(B2B)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몇 가지 제약 요소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술 인프라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가맹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용과 신뢰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기반이 마련된다면, PSC는 글로벌 자금 이동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금융 거래의 속도와 비용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은 미국 달러 기반 PSC 중 가장 대표적인 두 종목인 USDT(테더)와 USDC의 시가총액 성장 추이를 보여준다. 그래프는 시장 변동성과 다양한 디지털자산 이슈에도 불구하고, 두 스테이블코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전체 USD 기반 PSC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림 1.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추이⁹
USDT & USDC 시가총액 변화



USDT와 USDC를 제외하고, 현재 의회에 상정된 달러 기반 PSC 규제안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까지 포함할 경우, 나머지 상위 10대 스테이블코인의 총 시가총액은 약 150억 달러 수준이다. 이 범주에는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예: USDS, FDUSD), 암호자산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예: USDx), 합성형 스테이블코인(예: USDe),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예: USDD) 등이 포함된다. 상위 10대 스테이블코인의 구성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법정화폐 완전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PSC발행자는 달러 페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대가로, 준비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따르면, 이러한 준비자산은 반드시 고신용도·고유동성 자산에 투자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발행자의 주요 수익원이 된다. 예를 들어, 단기 미국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미국 국채를 담보로 글로벌 금융기관에 하룻밤 동안 현금을 빌려주는 레포(repo) 거래를 통해 금리 차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준비자산 운용 모델은 PSC의 가치 안정성 유지와 동시에, 발행자가 운용 비용을 충당하고 직접 보유하는 국채의 이자 수익과 레포 매매 차익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 PSC발행은 대부분 미국 연방 법률 및 규제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비은행권 기업(NBE)이나 크립토 네이티브(crypto native) 기업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미국 내 단일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 환경은 향후 PSC 발행을 고려하거나 추진하려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인프라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금융기관과 결제 사업자들은 자사의 플랫폼을 활용해 PSC를 통합하고, 이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며 고객 수요와 사업 기회에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 연방 규제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전략이기도 하다. 한편, PSC 이용자들 역시 국가 차원의 법적·규제 체계에 따라 인가된 발행자와 거래함으로써, 일관된 소비자 보호, 명시된 감독 체계, 그리고 PSC 준비자산에 대한 투명하고 정기적인 공시 요건 등의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더 많은 기관들이 이러한 연방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PSC를 운영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가 발행할 것이며, 이는 더욱 견고하고 유연한 금융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져, 시장 참여 확대와 투자 유인 강화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달러 페깅(dollar peg): 자산(또는 통화)의 가치를 미국 법정화폐인 달러(USD)에 고정시키는 환율 체계로, 환율 변동을 억제하고, 해당 자산(또는 통화)의 가치 안정을 목표로 한다.

다음 단계

전통 금융 인프라를 넘어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진화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한정된 개인 간 거래 수단에서 벗어나, 기업 간(B2B) 및 기업-소비자 간(B2C) 주류 결제 수단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은행이 주도해왔던 전통적 지급결제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기존 금융시스템의 중개 기능이 약화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연방 규제 체계가 마련될 경우, 은행들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B2B 및 B2C 결제 솔루션을 제공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여 더 빠르고 안전한 결제 방식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동시에 고객들도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을 점점 더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향후 스테이블코인의 도입과 활용이 확대되면, 전통적인 지급결제 인프라에 대한 구조적 도전을 야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 산업 전반의 가치사슬과 시장 지형을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05.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리스크

PSC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발행자가 감수해야 할 유의미한 리스크도 수반한다. 이는 전통 금융 규제 환경에서의 운영 리스크는 물론, 암호자산 생태계 특유의 기술적·법적 불확실성을 모두 포함한다. 각 기업이 PSC 생태계에서 담당할 역할에 따라 적용되는 리스크 유형과 그 심각성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해당 기술 및 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디지털자산 리스크 평가¹⁰를 실시하고,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거나 고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버보안 및 데이터 보호

PSC 발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리스크 중 하나는 사이버보안과 데이터보호이다.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이 탈취되거나 개인 키가 유출될 경우, 막대한 재무적 손실과 법적 책임, 그리고 이용자 신뢰의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발행자는 다중 인증(MFA)*, 정기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 종합적인 사고 대응 체계(IRP)와 같은 강력한 사이버 보안 조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의 오류나 프로토콜의 결함으로 인해 기술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PSC 운영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며 거래 지연 또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도 시스템이 대량의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발행자는 시스템의 내구성과 확장성, 운영 중인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및 비상 대응 계획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예방 조치는 PSC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다중 인증(MFA, multi-factor authentication):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인증 수단을 요구하는 보안 방식이다. 1차 인증(아이디, 비밀번호) 외에 휴대폰 인증, 생체 인식 등 추가적인 본인 인증을 통해 보안 수준을 높인다.

자금세탁방지

PSC 발행자는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제도(KYC), 그리고 적용 대상 주(州) 단위 법령 등 엄격한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규제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영업 제한, 심각한 경우 사업 중단 명령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 평판 훼손이나 고객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발행자는 강화된 AML·KYC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이고 견고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여기에는 고객 신원에 대한 철저한 실사 확인, 거래 기록의 체계적 보관, 의심 거래에 대한 감독당국 신고 등이 포함된다.

블록체인 및 스마트계약

PSC는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계약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특유의 리스크를 수반한다. 스마트계약에는 보안 취약점이나 프로그램 코드 오류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악의적 공격자가 악용하여 자산 탈취 및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도 하드포크*, 네트워크 혼잡, 기술적 장애 등으로 인해 거래 지연, 실패, 재무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발행자는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계약과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관련 기술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발행자는 PSC를 발행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선정할 때 사전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 과정에서 기술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블록체인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하드포크(hard fork): 기존 블록체인의 프로토콜이 하위 호환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체인과 분리된 새로운 독립 블록체인이 생성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블록체인 원장이 존재하게 된다.

스테이블코인 디페깅*

PSC에 수반되는 주요 리스크 중 하나는 페깅 이탈(디페깅, depegging)이다. 이는 유통 중인 PSC 단위의 가치가 본래 의도된 기준(예: 준비자산인 법정화폐 미 달러화와 1:1 연동)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디페깅은 주로 온체인 상의 밋팅(토큰 생성) 및 버닝(소각) 작업의 불일치, 준비자산의 부적절한 관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발행자는 정확한 밋팅 및 소각 활동과 효과적인 준비자산 관리를 보장할 수 있는 견고한 통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PSC가 페깅을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명확히 보여주는 수단으로서, 투명성 보고서 발행을 통해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디페깅(depegging):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가격이 공표된 기준 가치(예: 1달러)에서 이탈하는 현상이다. 주로 발행자 또는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 상실, 급격한 상환 요청, 유동성 부족, 시장 충격 등의 요인으로 발생하며,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 및 신뢰 기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리스크로 간주된다.

과세 이슈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법정화폐와 유사한 가치를 지닐 수 있지만, 미국 소득세법상 '통화'(money) 또는 '화폐'(currency)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대신, 일반 자산(property) 또는 경우에 따라 금융자산(채무상품, debt obligation)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와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의 등장 이전의 기존 미국 재무부 규정에 근거한 해석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 역시 기타 디지털자산과 동일한 정보 보고 요건(예: Form 1099-DA)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회계 고려사항

회계 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기업은, 해당 자산이 금융자산인지 또는 무형자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계약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자산의 분류, 후속 측정 방식, 이후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스테이블코인이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면, 해당 자산이 미국 회계기준(US GAAP)의 암호자산 관련 개정 지침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공시 요구사항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경우,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금융부채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운영 및 시장 리스크

PSC 발행자는 운영 리스크와 시장 리스크 모두에 노출되어 있다. 운영 리스크는 인적 오류, 사기, 내부 부정행위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PSC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시장 리스크는 준비자산의 가치 변동성을 포함하며, PSC의 안정성과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들 리스크는 재무적 손실, 운영 중단, 이용자 신뢰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발행자는 반드시 견고한 내부통제 체계,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구현해야 한다. 여기에는 수익성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사전에 설정된 기준과 한도에 따라, API와 파트너사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도 운영 안정성과 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와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인적 오류와 부정행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임직원 대상의 운영 절차 및 리스크 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준비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은 시장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PSC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 될 수 있다.

규제 미준수

PSC를 둘러싼 규제 환경은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행정 제재, 법적 소송, 고객 피해 및 기업 평판 훼손에 직면할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발행자의 운영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발행자는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적응가능한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독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 업계 협의체 및 포럼 참여,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의 자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점검을 통해 잠재적 규제 공백이나 문제점을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다. 아울러, 감독 당국과의 선제적 교류와 컴플라이언스 노력에 대한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은 규제 미준수 리스크를 한층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06. 시장 참여를 위한 핵심 역량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PSC 발행자는 견고한 운영 체계, 지속적인 규제 준수, 그리고 정교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갖춰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PSC를 둘러싼 규제 환경은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관할권 및 감독기관별로 접근 방식과 요구 사항이 상이하다. 따라서 PSC 발행자 및 발행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러한 규제 요구사항이 비즈니스 전략, 거버넌스,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 컴플라이언스, 감사, 자금 관리 등 자산의 PSC 상품과 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PSC 관련 법안의 허가된 발행자 요건, 연방 및 주 정부의 인가 및 감독 구조 등 핵심 구성요소와 공통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PSC 발행자 및 비발행자*는 규제 및 경쟁 리스크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명확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PSC 및 블록체인 기반 사업은 규제 미준수, 시장 변동성, 운영 비효율성, 사이버 보안 위협 등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측정하며,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다. 또한, 리스크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하여 공식적인 리스크 선호도(risk appetite)를 정의하고, 현행 규제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향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리스크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새롭게 필요한 역량을 신속하게 식별하여 확보할 수 있는 리스크 대응 체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PSC 발행자에게는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여기에는 명확히 정의된 조직 구조, 효과적인 이사회 및 경영위원회 운영, 역할과 책임의 명확한 분배가 포함된다. 또한, PSC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자산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견고한 자금관리 정책,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비상 대응 계획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PSC의 폐킹 상태를 유지하고 적시 상황을 지원할 수 있다. 발행자는 유동 중인 토큰의 롤포워드(roll-forward)와 준비자산과의 상호대사를 수행하고, 이를 포함한 투명성 보고서를 대외 공시함으로써 PSC 이용자의 신뢰와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유동성 부족, 준비자산 관리 실패, 폐킹 유지 실패 등 주요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핵심 역량을 개발하고 유지함으로써, 발행자와 비발행자 모두 복잡한 리스크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각자 PSC발행과 관련 서비스 지원 과정에서 규제 준수, 운영 효율성, 이용자 신뢰 확보를 달성할 수 있다. PSC 생태계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이러한 역량을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규제 컴플라이언스, 운영 역량, 리스크 관리 전문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PSC 생태계에서 성공적인 시장 포지셔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비발행자(non-issuer): PSC를 직접 발행하지는 않지만, 발행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수탁기관, 지급결제 처리기관, PSC 현금 준비금을 보관하는 예치기관, 유동성 공급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07. 영향 분석 및 대응 프레임워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PSC를 둘러싼 규제 환경은 복잡하고 역동적이다. 관할 권과 감독기관마다 서로 다른 접근 방식과 요구 사항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PSC를 발행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기관과 이용자는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제 요건과 그 파급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섹션에서는 PSC 발행자가 직면할 수 있는 주요 연방 및 주(州) 정부의 규제 기대사항을 살펴본다. 해당 요구 사항들이 비즈니스 전략, 거버넌스, 전사적 리스크 관리, 준법감시, 내부감사, 자금관리 등 각 영역에서 요구되는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다. 이러한 규제 기대사항은 PSC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의 발전과 변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 미국 규제 당국과 글로벌 기구들이 제시한 기존의 요구사항을 함께 반영한 것이다.

			영향도		
			높음	중간	낮음
예상 규제 요건	참여 가능성		주요 검토 사항 (업계 사례 기반)		
	발행자	비발행 참여자			
비즈니스 전략					
• 시나리오 기반, 가정에 따른 예측자료, 사업계획 수립 및 업데이트 기반 명확한 사업 전략 수립 • PSC 관련 규제, 리스크, 경쟁 환경에 대한 다양한 영향 시나리오 분석 • 재무적 자원, 경영 및 기술 전문성, 거버넌스 실무 체계 확보 검토 • 공공 편익, 금융 시스템 안정성, 커뮤니티의 수요, 금융 포용성 제고 계획 등 추가 고려사항 포함			• PSC와의 연계 방안 정의 및 문서화 (세부 절차 및 현재 보유 역량 포함) • 예치 토큰(deposit tokens)의 확산 및 1:1 상환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예금(인가된 예금기관 발행)이 전체 사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운영 모델(인력, 프로세스, 기술, 내재화 또는 외주) 및 핵심 기술 아키텍처의 문서화(자금 흐름 포함) • PSC 관련 규제 요건에 부합하는 리스크 및 통제 프레임워크 구축 • TPRM(제3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정책 및 절차 수립, 공급업체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통제 적용		

영향도		
높음	중간	낮음

예상 규제 요건	참여 가능성		주요 검토 사항 (업계 사례 기반)
	발행자	비발행 참여자	
리스크 관리			
• PSC 및 블록체인 기반 활동 관련 리스크를 식별, 측정, 모니터링 및 완화하기 위한 ERM 체계 추구/개선 • 조직 구조, 의사결정 및 보고 체계를 포함한 리스크 거버넌스 체계 수립/개선 • PSC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리스크 수용범위 및 허용한도 정의 • 하향식, 전사적 차원의 리스크 평가 및 실사 수행 • 이사회가 고려하는 법적 리스크 식별, 대응 및 관리 전략 문서화 • 관련 법령(예: 은행비밀법, 애국법 등) 준수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통제 유지 • PSC 관련 지표를 포함한 전사적 리스크 보고 역량 강화 • PSC 관련 다양한 리스크(운영, 시장, 유동성, 사이버 보안, 사기, 블록체인 기술, 제3자 서비스 제공자 포함)를 관리하기 위한 접근 방안 문서화 • 상환 등 계약상 의무 이행 능력 평가, 준비자산 모니터링, 차익거래 리스크 분석, 자산 이동 분석, 구제수단 유무, 온체인 거래와 은행 이체 비교 수행 • PSC 발행하는 은행이 적절한 보험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 • 업계 리스크, 대중인식 악화에 따른 리스크, 시장 리스크 민감도, 감독 등급의 영향 등을 리스크 평가에 포함 • 신규, 변경 또는 확장된 상품 승인 절차(NPA) 수립 • 상품 변경 시 전면적인 리스크 평가 및 승인절차를 포함한 강력한 리스크 관리 체계 적용 • 신규 상품/서비스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NPA 절차 수립 • 제안된 활동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 문서화 • 정책 및 절차 수립 관련, 이사회 및 경영진의 감독 기능 보장 • 은행권의 신규 프로그램을 위한 포괄적인 컴플라이언스 및 법률 검토 수행(문서화 및 규제 프레임워크 포함) • 프로젝트 계획 수립 및 문서화 (예상 거래량, 비용-편익 분석, PSC 서비스의 재무적 타당성 평가 포함)			• PSC 특유 리스크를 반영한 ERM 프레임워크 고도화 및 리스크 선호도 업데이트 •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 문제 해결, 신규 기술 테스트, 기존 금융기관에 적용되지 않았던 블록체인 리스크 식별 등 운영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 전문 인력 확보 • PSC 가치사슬 내 활동 관련 리스크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 확보 • PSC 관련 리스크를 고려한 신상품 승인 절차 및 거버넌스 프로세스 수립 • 스마트 계약, 비가역성, 키 관리 등 PSC 특유의 리스크를 다루는 승인 절차 운영 • PSC 관련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종합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식별/실행 역량 확보 • 조직 파산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산 회수 (claw-back) 사안 관련 절차 수립 및 실행 가능한 체계 마련

영향도		
높음	중간	낮음

예상 규제 요건	참여 가능성		주요 검토 사항 (업계 사례 기반)
	발행자	비발행 참여자	
운영 측면 -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 스테이블코인의 발행(minting) 및 소각(burning) 절차 수립 •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 수량과 그에 상응하는 준비자산 잔액 간의 정기적인 대사 결과를 외부에 공시 • 민팅 및 소각 요청 관련 주소에 대한 거래 모니터링 및 제재 대상 스크리닝 수행 • 스테이블코인 보유가 허용되지 않는, 제재 대상 특정 업체의 자산을 동결/해제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활용 중인 블록체인 및 스마트계약의 신뢰성 평가 • 민팅 및 소각 활동을 위한 사전예방/사후적발 통제 절차 수립 • 고객 온보딩 시점 및 운영 과정에서, 블록체인 주소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점검 수행 • 지갑의 개인 키(private key)는 보안 관리 (자체 보관 또는 수탁 솔루션 활용) • 모든 지갑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 개발(애플리케이션 계정 설정/업데이트 포함) • 모든 관련 거래 정확하게 모니터링/관리 (회사의 내부 지갑과 고객 사용 외부 지갑 모두 추적) • 이용자에게 본인의 USD 및 PSC 보유 현황을 실시간 조회확인 기능 제공
규제 대응			
• PSC 관련 활동을 개시하기 전, 관련 법령에 대한 법적 해석과 규제 요건 선제적 검토 • PSC 발행 전, 규제기관의 승인 또는 라이선스 취득 • PSC 발행에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공급업체와 계약 체결 또는 해당 서비스 제공 시, 30일 이내 해당 연방 규제기관에 통지 • 필수적인 승인 및 사전 감독 승인(non-objection) 확인을 위해 규제 기관과 적극적 소통			• 관련 기관 역할에 필요한 라이선스를 평가하고, 향후 규제 리스크 완화를 위한 높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 • PSC 운영 계획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될 규제기관 및 요구사항 목록을 포함한 규제 인벤토리 구축 및 규제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는 내부역량 확보 • 사전 제출 요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필요 시) 규제 승인용 사업계획서 작성을 포함한 규제 대응 계획 수립 • PSC 규제 요건 및 기대사항 변화에 따라, 은행의 정책 및 절차의 업데이트를 보장하는 규제 추적 및 변경관리 체계 구축

영향도		
높음	중간	낮음

예상 규제 요건	참여 가능성		주요 검토 사항 (업계 사례 기반)
	발행자	비발행 참여자	
컴플라이언스 고려사항			
• PSC 발행 기관은 다음 두 가지 구조 가능: - 발행 규모 100억 달러 이하: 연발 등록 비예금 신탁사(non-depository trust company) 형태 - 발행 규모에 제한 없이 운영하려는 경우: 미 통화 감독청(OCC) 또는 주 은행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은 예금기관(depository institution) 형태 • 개인정보, 소비자 보호 등 PSC 관련 법적 의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업데이트 • 뉴욕주 PSC 발행자는 NYDFS 지침(준비자산 요건 포함)을 3개월 내 준수해야 함(연례 인증 요건은 예외) • 발행자는 내부 통제, 조직 구조, 컴플라이언스 절차에 대하여, 독립적인 공인회계사의 연례 인증보고서를 확보해야 함 • 시가총액이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발행자는 연방 규제를 받아야 하며, 그 미만의 경우 일정 연방 기준을 충족하면 주 규제 옵션 선택 가능 • 비은행 금융기관(NBEs)이 PSC 발행 시, 은행지주회사법(BHC)에 따라 계열사 거래 제한 적용 • PSC 거래 시스템 이용 시 고객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및 비용을 명확히 식별 및 공시해야 함 • 전자서명 동의, 라이선스, 기업 간 계약은 규제 및 운영 요건을 준수해야 함 • 신규 암호자산 활동에 대하여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사전 협의 •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평가, 모니터링, 보고 및 시정 조치 절차를 위한 시스템의 적정성 점검			• PSC 특성에 맞춘 소비자 보호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고유 리스크를 설명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리스크 평가 방법/투명성/리스크 완화 전략 안내) • 소비자 민원 대응 절차 수립, 잠재적 운영 이슈를 조기 식별, PSC 리테일 채택 관련 컴플라이언스/평판 리스크 최소화 • PSC 관련자(발행자, 결제처리기관, 은행 등)가 대출 제한, 리스크 관리, 유동성 및 자본 요건, 상업적 연계 제한, 고객 데이터 활용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 • 규제 변화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통합/업그레이드 가능한 규제 추적 시스템 구축 • 비수탁형 지갑을 지원하는 발행자를 위한, 광범위한 KYC, BSA/AML 요건 및 거래 모니터링 역량 구축 • 제3자 서비스 제공자(특히, 디지털자산과 법정화폐 간 교환 등을 지원하는 실명계좌 은행)의 거래상대방 실사 절차 수립 • 준비자산 보관을 위한 예금기관과 서브 커스터디 계약(하위 수탁계약) 체결 • 은행 수준의 정책, 절차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은행 인가 취득 시 발생하는 신규 의무 대응 포함)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및 증권 규정 준수 (PSC의 증권 분류 가능성 고려) • 연방 규제기관이 수립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및 자본/유동성 규제 요건 준수 • 발행자 또는 비발행자로 참여하는 은행의 경우,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 업데이트 (규제 불확실성과 새로운 업무범위 리스크로 인해 중대한 구조적 변경이 요구될 수 있음) • 비발행 참여자(은행 제외)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 적용될 수 있음(재무제표 상 PSC 미계상). 다만, 주별 송금업 라이선스(MTL) 개정 사항에 대한 대응 필요

영향도		
높음	중간	낮음

예상 규제 요건	참여 가능성		주요 검토 사항 (업계 사례 기반)
	발행자	비발행 참여자	
BSA/AML 프로그램 고도화			
- 모든 암호자산 활동을 포함하도록 리스크 평가를 업데이트하고, 다음의 BSA/KYC/AML 고려 사항 반영: -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 및 제재 관련 이슈 -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 애국법(USA Patriot Act) - 자금세탁(ML) 및 테러자금조달(CFT) 리스크 식별 및 평가 - 의심거래보고(SAR)를 포함한 트랜잭션 모니터링 - 거래기록 유지 및 보관 - 기존의 모니터링 및 내부 감사 프로세스는 PSC 활동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하고, 새롭게 요구되는 AML/CFT 통제를 문서화 및 감사 계획에 반영			모든 참여자 - BSA/AML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강화된 실사(EDD)와 KYC를 포함한 고도화된 온보딩 절차를 마련. PSC 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부정 또는 불법 자금 이동에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 OFAC 규제 준수를 위한 거래 차단·보고·기록 보관 시스템 및 지리정보 기반 도구, IP 차단 등 기술적 제재 통제 수단도 함께 구축 - 기존 트랜잭션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분석 도구를 함께 활용 - PSC 출시 전, ML/TF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 및 평가하고, 관련 리스크 관리 및 통제 방안 마련 비은행 PSC 발행자 및 결제 처리기관 - 민간 기업에 대한 AML/CFT 및 제재 요건 미이행 시, 관련 모든 PSC 참여자는 규제당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AML 거래 모니터링 통제의 정기적 테스트 수행 비은행 PSC 발행자 및 서비스 제공자 - PSC 발행자 및 서비스 제공자를 BSA상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여 적용될 규정 대응체계 준비

영향도		
높음	중간	낮음

예상 규제 요건	참여 가능성		주요 검토 사항 (업계 사례 기반)
	발행자	비발행 참여자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명확한 사업 부문 및 법인 구조, 기관 산하 법인 및 비은행 계열사 간의 상호 연계·의존 관계를 포함한 조직 구조 정의 • 효과적인 감독과 내부통제를 포함한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시 적시에 인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 •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과 이의 제기가 가능한 구성원을 명확히 한 이사회 및 경영위원회 구성 • 이사회, 경영위원회, 제2선 방어라인, 사업 부서별 주요 인력의 역할과 책임 정의 • 은행 간 거래 관계, 정보 공유 방식,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규제 준수 방안 등 사전에 정의하고 문서화 • PSC 관련 주요 활동에 대한 이사회 및 위원회의 논의, 검토, 승인 이력 등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 및 보관 • 공급업체에 대한 인벤토리 관리, 리스크 평가, 실사, 성과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규제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내부 프로세스 최신화 • 제휴 서비스 활용 시, 성과 기대치와 모니터링 기준을 문서화하기 위한 SLA(서비스 수준 계약) 검토 • 커스터디, 지갑 등 PSC 운영에 핵심적인 제3자/공급업체는 연방 PSC 규제기관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음 • PSC 운영에 필수적인 외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재무 건전성 요건 정의 및 계약 요건에 반영 • 취약한 키 관리 정책·절차를 갖춘 제3자의 사용으로 인한 무단 접근, 손실, 평판 리스크를 관리 • 제3자 접근 권한 정의, 데이터·거래 제한 포함 • 공급업체 심사절차 정의 및 재무분석·운영통제 등 핵심 항목 검토		• 명확한 책임 라인과 책임소재가 정의된 최신 거버넌스 구조 수립 • PSC 관리 전반을 지원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 확보 • 준비금 유용이나 부정 행위 등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3선 모델에 기반한 견고한 내부통제 구축 • PSC를 보유한 은행은 거버넌스 구조(위원회, 법무사 자문기구 등)를 개편해야 할 수 있으며, 신사업 리스크 및 암호자산 리스크 모니터링 능력이 핵심 • 시장 참여자 전체에 적용되는 통합형 거버넌스 체계 수립 (책임라인 명확화 + 리스크 프레임워크 포함) • 투자자·소비자 보호를 위한 PSC 준비자산과 유통량 일치 여부에 대한 감독 체계 구축 •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 및 경영진 구성 • PSC 관련 핵심 기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제3자 리스크 관리 및 감독 역량 강화 • 관계회사 간 내부 통제 및 제휴 관리 거버넌스 절차 수립 • 고객/클라이언트에 대한 감독 강화로 규제 위반 리스크 최소화 • 제3자 서비스 공급자 관리 정책 및 온보딩 절차 문서화 위한 정책 및 절차 수립, (i) 계약된 모든 제3자 목록 (ii) 해당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설명 (iii) 계약 전 수행된 실사 결과 요약 포함 • 명확한 역할 및 종료 계획이 포함된 SLA/계약 체계 수립, 성과 모니터링 포함 • 은행이 신규 공급업체를 온보딩할 경우, 기존 TPRM 절차의 업데이트 필요 • 기존 내부 수행 기능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 계약 체계 수립 • 발행자를 지원하는 공급업체에 대해 은행 수준의 규제, 연준 감독, 자본 요건 대응 역량 확보	

영향도

높음 중간 낮음

예상 규제 요건	참여 가능성		주요 검토 사항 (업계 사례 기반)
	발행자	비발행 참여자	
자금운용 및 재무관리			
• 자본 적정성과 자본 관리 체계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해야 함 • 유동성 측정 및 비상 대응 계획을 포함한 유동성 관리 체계 수립 • 재무상태표 관리 • 비상자본 조달 계획 수립 • 준비자산 관리 • PSC 발행자는 매 영업일 말 기준으로 유통 중인 PSC 총액과 동일한 액면가에 해당하는 준비자산을 반드시 보유해야 함 • 준비자산은 해당 법령 및 규정에서 허용하는 자산(예: 국채, 레포)으로 구성해야 하며, 만기 요건, CCP 또는 이사회 승인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자체 담보형(알고리즘 기반) PSC의 발행은 불법으로 간주됨 • 상황 관리 • PSC 보유자의 상황 권리에 대한 정의 및 상황 시점 명확화 (상황 요청 후 최대 1영업일 이내 처리) • 수탁 자산에 대한 감독 정책 및 절차 수립 • PSC 리스크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 재무 계획 및 재무 분석 수행			은행 및 비은행 PSC 발행자 • 안전성, 건전성,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자본 및 유동성 유지 • 자본·유동성 유지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 정책 및 규정 마련 • 비상자본 조달 및 유동성 계획 수립을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 및 민감도 분석을 포함한 예측 역량 확보 • 준비자산 구성과 상황 권리 명시, 스트레스 상황 시 신속한 상황을 위한 추가 자금 조달 계획 마련 • 준비자산은 1:1 비율로 유지, 고객 상황 요청 이외의 목적(담보설정·재사용 등)으로는 사용 불가 • 준비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이사회, OCC, 주 은행감독기관의 사전 승인된 레포 거래 사용 • 고객의 지시 없이 자산 매각, 양도, 담보 설정 등 불가하도록 발행자 내부 통제체계 문서화 • 1일 내 상황 처리 역량 확보 • 수탁 서비스 제공 시, 고객 자산과 발행자 자산을 분리 보관 • 매월 외부 인증 및 정보 공시 수행 • 준비자산 보호 및 신속한 상황 접근을 위한 수탁 정책·절차·계약 체계 수립 • PSC 리스크 평가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 및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유동성 한도 설정 및 경영진 정기 리뷰에 활용 • 조직 및 법인 단위의 전략 계획 및 예측 수행 (현재 상태, 미래 전략, 경제 환경, 세무 관할 등을 고려) • PSC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식과 유동성 요건에 대한 영향 평가 • 은행의 경우, PSC가 해당 위험가중자산(RWA) 처리 기준에 적합함을 감독기관에 입증 • PSC 정산 타이밍과 기존 시스템 간 불일치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불일치 리스크 식별 및 대응 • PSC가 보유자에게 발행자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청구권 또는 준비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부여하는지 여부를 평가 • 정상 상황과 위기 상황 모두, 해당 준비자산이 액면가 기준으로 타 유동성 자산으로 즉시 전환 가능한지 검토

			영향도
			높음 중간 낮음
예상 규제 요건	참여 가능성		주요 검토 사항 (업계 사례 기반)
	발행자	비발행 참여자	
기술 및 정보보안			
정보보안 및 업무 연속성 계획(BCP) - 재해복구 및 업무연속성 계획(BCP) 수립 - IT 통제 및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정보보안 프로그램 구축 - 핵심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사이버-데이터 보안 사고를 관리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프레임워크 수립 -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지정 - 다중 인증(MFA) 등 효과적인 보안 통제 적용 -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정책 유지,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과 조치 내용 명시 - 하드웨어 보안 설정 미흡으로 인한 프라이빗 키 추출 또는 손실, 백업/저장 미비로 복구 불가능한 PSC 접근권 상실 리스크 관리 - 프로토콜/노드 소프트웨어의 버전 불일치 또는 구버전 사용으로 인한 보안 취약성 및 네트워크 중단 리스크 관리			모든 참여자 - PSC 수탁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 거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한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운영 프로세스 마련 필요 - 미 연방 금융기관 검사위원회(FFIEC) 기준에 부합하는 IT 통제 및 IT 거버넌스 관행 확보 - 세금,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재무 프로세스(예: 거래 모니터링 등)를 지원하는 시스템 확보 - 비발행자 대상 PSC 사용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대응계획 마련 - 정보보안 및 BCP 업데이트 시 PSC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은행 및 비은행 PSC 발행자 - 보안 프로그램 및 업무연속성 계획의 이행·감독 책임을 지는 CISO 지정 - 다중 인증, 거래 복원, 감사 추적 기능 확보 - 정기적으로 정보보안 취약점을 식별·평가할 수 있는 역량 확보 -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연동(브릿지 활용 또는 PSC 감금 후 신규 발행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확보 - 접근 제한, 프라이빗 키 보관 모니터링, 지급 보안 통제 등을 포함한 키 관리 역량 및 자산 보호 정책 수립 - 소비자 불만 처리 정책 수립 -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프라이빗 키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백업 및 복구 시스템 구축 - 기존 레거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최신 업계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 블록체인 노드 소프트웨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오프체인 거래와 유사한 활동 탐지 - 현재 및 향후 블록체인 처리량·해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지 정기적으로 네트워크 용량을 분석·시뮬레이션하는 프로세스 구축
기술 및 IT 리스크 - 디지털 통화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및 IT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 지속적인 보안 취약점 평가 수행 - 블록체인 인프라 또는 레거시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데이터 기록·처리 오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 → 데이터 불일치 및 규제 위반 가능성 포함 - 비효율, 금전적 손실, 이용자 불만 유발할 수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혼잡으로 인한 거래 지연 또는 실패 리스크 관리 - 노드 검증 프로세스 미비로 인한 무단 접근 또는 거래 검증 참여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 - 하드포크·소프트포크를 통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 네트워크 불안정성 또는 사용자 불편 초래 리스크 관리			

예상 규제 요건	참여 가능성		주요 검토 사항 (업계 사례 기반)
	발행자	비발행 참여자	
- 은행과 운영 시스템, API, 기타 관련 시스템 간의 연계 구조 설명 - 공개형, 비허가형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한 PSC 발행 관련 사항 포함			- 고객 클러스터에 대해 언제든지 서명 노드가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고, 관련 네트워크 속도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절차 마련 - 이중 노드 확보 및 노드 검증 절차를 구현하며, 모든 인프라 전략 계층에서 다운타임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 적용 - 시스템 구성 변경 시 사전 테스트 수행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후 발견된 보안 취약점은 관련 위원회 또는 고위 경영진에게 즉시 보고 - 내부 인력 또는 제3자에 의해 연 1회 이상 기술 테스트 수행 - 기존 법정통화 시스템과 통합 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식별, 특히 거래 유효성 검증 및 분산원장 데이터 무결성 관련 리스크 관리 중요

영향도		
높음	중간	낮음

예상 규제 요건	참여 가능성		주요 검토 사항 (업계 사례 기반)
	발행자	비발행 참여자	
회계, 공시 및 내부통제			
• 규제 보고 • 재무 보고 - 자금 교환 내역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방식 명시 - 자산 자체가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또는 반영 계획 명시 • 세무 정보 보고 • 회계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 • 외부 감사에 기반한 투명성 확보 • PSC 관련 소득세 처리 방식 정의 • 총계정원장에 미치는 영향 (이체, 소각 등 거래별 회계분개 샘플 유지) • 회계기록 보관 의무 이행 • 준비금 보고 및 인증(attestation) - PSC 발행자는 매월 말 기준으로, 준비금의 시장 가치(자산 유형별 구성 내역 포함), 유통 PSC 수량, 그리고 해당 준비금이 유통 PSC를 1:1로 전액 담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인가된 공인회계사를 통해 외부 인증 보고서를 확보해야 함 - 총 PSC 발행 규모가 1억 5천만 달러 초과하는 발행자는, 해당 회계연도의 주요 사업 활동(예: 합작 투자, 파트너십, 금융 포용성 확대 노력 등)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연방 규제기관에 제출해야 함 • 재무제표상 암호자산 관련 항목이 어떻게 구분·식별되어 계상되는지를 명확히 정의해야 하며, 관련 회계 기준에 따라 일관된 분류 체계를 적용해야 함 • PSC는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NCUA(미국 국립신용조합관리청) 및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등 주요 규제기관은 커스터디 형태로 보관 중인 PSC를 금융기관의 부채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함			• PSC에 대한 소득세 처리 방식을 발행자와 보유자 양측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구체적인 세법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는 약관과 운영 설계를 기준으로 판단함 • 자산 이전의 법적 종결성을 인정하고, 일단 종결된 거래는 원상 상태와 관계없이 변경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법률 프레임워크를 확보함 • 기술적 정산과 법적 종결 간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미완료·미결·비활성 상태의 계좌 또는 거래는 최소 5년간, PSC 관련 거래 기록은 최소 7년간 보관함 • 자산과 부채의 구성을 추적하고 보고할 수 있는 재무보고 시스템을 구축하며, 해당 시스템은 콜 리포트, 분기 및 연간 재무제표, 외부 감사 보고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보험 적용 예금기관 수준에 부합하는 완전성, 적시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통제 및 품질보증 체계를 수립함 • 준비자산 구성과 내부 통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이는 PSC 발행자의 선도적 실무 기준과 향후 규제 요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함 • 매월 검토 및 인증 보고서를 작성함 • PSC 관련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및 재무보고 작성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 시 새로운 내부통제를 설계함 • 발행자 또는 비발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은행은 회계, 세무, 규제 보고 체계를 PSC 관련 현행 및 향후 규제 기대사항에 부합하도록 업데이트해야 함 • 내부통제 체계를 최신화하고, 필요 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추가 통제를 도입해야 하며, 해당 통제는 유통 중인 PSC 단위에 상응하는 충분한 준비자산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예상 규제 요건	참여 가능성		주요 검토 사항 (업계 사례 기반)
	발행자	비발행 참여자	
			• 커스터디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데이터 및 보고 프레임워크 강화, 견고한 회계 관행 수립, 자산 보관 절차 마련, 자산의 적절한 분리 보관, 내부통제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함 • 원장상 이체가 무조건적이며 철회 불가능한 상태로 확정되고 기술적 정산이 발생하는 시점을 정의해야 하며, 기술적 정산과 법적 종결성 간 불일치로 인한 리스크를 식별해야 함

08. 결론 및 시사점

본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에 관심 있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에게 풍부하고 유망한 기회를 소개하고 있다. 최근 들어 규제당국의 입장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감독기관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구조적 전환 가능성을 점점 더 인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에 특화된 맞춤형 규제 프레임워크가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더욱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참여를 고려하는 조직은, 시장 기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자사의 운영 전략, 리스크 관리 체계, 거버넌스 체계 등 내부 역량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준비를 통해,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규제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컴플라이언스-리스크 관리 측면에서의 모범 사례 채택은 이처럼 복잡하고 역동적인 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견고한 기반 위에서 전략적 투자를 하는 조직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고, 변화의 흐름 속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석

1. Rob Massey et al., "[Engaging with stablecoins?](#)," Deloitte, March 2023; Rob Massey et al., "[So, you want to be a stablecoin issuer?](#)," Deloitte, 2021.
2. The White House,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January 23, 2025. See also Deloitte, "[President Trump issues executive order to advance digital assets](#)," 2025.
3. US Congress, "[S.394 – GENIUS Act of 2025](#)," February 4, 2025; US Hous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Hill and Steil release discussion draft for stablecoins](#)," press release, February 6, 2025; US Hous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Democrats, "[Ranking Member Maxine Waters unveils bipartisan stablecoins legislation](#)," press release, February 10, 2025.
4. The White House,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 see also Deloitte, "[President Trump issues executive to advance digital assets](#)."
5. 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 (FRB), Governor Christopher J. Waller, "[Reflections on a Maturing Stablecoin Market](#)," speech given at A Very Stable Conference (San Francisco, CA, February 12, 2025);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Staff Accounting Bulletin No. 122](#)," January 23, 2025; SEC, "[SEC Crypto 2.0: Acting Chairman Uyeda announces formation of new crypto task force](#)," press release, January 21, 2025.
6.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OCC clarifies bank authority to engage in certain cryptocurrency activities](#)," news release, March 7, 2025.
7. US Congress, "[S.394 – GENIUS Act of 2025](#)"; US Hous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Hill and Steil release discussion draft for stablecoins](#)"; US Hous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Democrats, "[Ranking Member Maxine Waters unveils bipartisan stablecoins legislation](#)."
8. DefiLlama, "[Stablecoins circulating](#)," accessed March 11, 2025.
9. Ibid.
10. Roy Ben-Hur et al., "[Digital asset risk assessment: A new paradigm in risk management](#)," Deloitte, 2022.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블록체인 기술, 디지털자산 분야 종합 자문 서비스

딜로이트 디지털자산센터는 기업의 디지털 경제 전환 과정에서 직면하는 전략적, 기술적,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 게임, 부동산 및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자산 활용에 대한 전략적 인사이트와 회계감사, 리스크, 세무자문 및 컨설팅을 아우르는 종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기업이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의 여정에서 성장 파트너로서 함께할 것입니다.



김경호 파트너(센터장)

회계감사 부문

Tel: 02 6676 1230

Email: kyoungkim@deloitte.com

Audit & Assurance



공선희 파트너

회계감사 부문

Tel: 02 6676 1264

Email: sgong@deloitte.com



박영범 파트너

회계감사 부문

Tel: 02 6676 3066

Email: youngbpark@deloitte.com



김선호 파트너

회계감사 부문

Tel: 02 6676 1117

Email: sunhkim@deloitte.com



이진 수석위원

회계감사 부문

Tel: 02 6676 1954

Email: jlee36@deloitte.com



윤현숙 이사

회계감사 부문

Tel: 02 6676 1122

Email: hyyun@deloitte.com



황지현 이사

회계감사 부문

Tel: 02 6676 1140

Email: jihwang@deloitte.com



김지영 이사

회계감사 부문

Tel: 02 6676 2796

Email: jyoungkim3@deloitte.com



한세리 이사

회계감사 부문

Tel: 02 6676 3208

Email: serhan@deloitte.com



성백준

회계감사 부문

Tel: 02 6676 3367

Email: basung@deloitte.com



정옥성

회계감사 부문

Tel: 02 6676 1252

Email: okjeong@deloitte.com



최영지

회계감사 부문

Tel: 02 6676 2021

Email: yeongjchoi@deloitte.com

Strategy, Risk & Transactions



김혜미 파트너

경영자문 부문

Tel: 02 6099 4288

Email: hkim21@deloitte.com



염승원 파트너

경영자문 부문

Tel: 02 6676 2125

Email: syeum@deloitte.com

Technology & Transformation



이동기 파트너

컨설팅 부문

Tel: 02 6676 1963

Email: dlee31@deloitte.com



안상혁 파트너

컨설팅 부문

Tel: 02 6676 3625

Email: sanghyan@deloitte.com



임태수

컨설팅 부문

Tel: 02 6676 3867

Email: tealim@deloitte.com



신지윤

컨설팅 부문

Tel: 02 6676 2057

Email: jiyoshin@deloitte.com

Tax & Legal



김영필 파트너

세무자문 부문

Tel: 02 6676 2432

Email: youngpkim@deloitte.com

앱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Contact us

딜로이트 인사이트 | krinsightsend@deloitte.com
디지털자산센터 | krdac@deloitte.com

연구원

조예원 Senior Consultant
yewcho@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